2022년도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정기종합 감사결과

Ⅰ 감사 개요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○ **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**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**사업** 및 **시설 관리운영**에 대한 **업무추진** 내용을 **점검**하여 **기관운영 효율성 제고**

- **박람회장 활성화 사업 추진**, **안전 관리**, **내규 관리**, **채용**,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으로 기관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**제도적 개선방안 도출**

2. 감사대상 및 범위

○ 2019. 6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○ 2022. 9. 26. ~ 9. 30.(5일간), 감사담당관 외 4명

4. 감사 중점사항

○ 박람회장 사후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
○ 박람회장 안전 관리 및 위기상황 대비에 관한 사항

○ 조직·인사, 예산편성, 집행, 결산에 관한 사항

○ 여비, 관서운영비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

○ 재단 자생력 강화 및 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등

Ⅱ 감사 결과

1. 박람회장 내 행사 사전검토 등 소홀

○ 재단은 **박람회장 활성화** 프로젝트의 **일환**으로 **여수야(夜)놀자*** **행사**를 '22. 7월부터 '22. 10월까지 4개월 동안 개최하는 **계획**을 민간업체와 **추진**

* 박람회장 일대에 푸드 스트리트·비어 존 조성, 상설 공연 등 추진

※ 실제 행사는 푸드 스트리트 조성 곤란,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조기 종료(`22. 8. 8.)

가. 행사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

○ 재단은 「여수세계박람회장 전시실 및 옥외시설 운영규칙」(이하' 운영규칙'이라 함)에 따라 **행사의 적격여부**를 **파악**하고, **행사장 사용승낙 전 사용 신청내용**을 **심사**해야 함

- 그러나, 재단은 '여수야(夜)놀자' 행사 추진업체가 제출한 행사계획에 대한 **기대효과 등 일부 내용만**을 **검토**하였을 뿐, 행사 적격여부를 파악하거나, 사용 신청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음

나. 음식물 관련 영업행위 및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

○ **행사장 사용승낙** 및 사용자와의 **임대계약 체결 과정**에서 재단 **운영규칙**이 금지하고 있는 **음식물 판매 등**의 **영업행위**를 사실상 **허용**

- **음식물 판매 등 영업행위**가 **포함**된 사용신청서가 제출되었음에도 **행사장 사용**을 **용인**하는 임대계약서를 체결하여 재단 스스로 **운영규칙**을 **위반**

➡ **(행정상) 행사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고 운영규칙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'여수야(夜)놀자' 행사 관련 업무처리 부실에 대해 "경고" 처분(기관경고 1)**

2. 방문객 안전사고 보고 등 부적정

○ 2019년부터 종합감사일('22. 9. 30.) 현재까지 **박람회장**에서의 **방문객 안전사고**(총 7건)에 대한 **내부 보고 및 조치사항** 등 **일부 미흡**

- **방문객 안전사고**에 대한 일반적인 **처리 규정**이 **없으며, 인명피해**가 발생한 **일부 사고**(6건 중 4건)의 **이사장 보고*** 여부 **확인 불가**

* 재단 「위임전결규칙」에 따라 인명피해 사고는 이사장에게 보고 필요

- 대체로 사고 원인이 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조치가 이뤄졌으나, **일부 사고**에 대해 **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방안 강구 소홀**

➡ **(행정상)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 확인 및 재발방지 조치 등이 검토·보고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지침 등 마련 요구(통보 1)**

3.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부적정

○ 재단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하나 **매뉴얼 제정**('16.3) **이후 현행화 등 소홀**

- 매뉴얼 제정 이후 **3차례 조직개편**('17.3, '21.4, '22.4)을 하였으나 **위기사항 대응 매뉴얼**에 관련 내용 **미반영**

* 위기경보 발령체계, 위기상황 조직 및 지휘체계, 조직별 임무와 역할의 재단 직제와 상이

- 특히, 현재 **직급**이 **폐지**('21. 4월)**된 본부장**이 **위기상황 대책단장** 등 핵심 업무를 **수행**하는 것으로 위기상황 대응 **매뉴얼에 규정 중**

➡ **(행정상) 위기상황 매뉴얼을 부실하고 관리하고 개정 작업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"경고" 처분(기관경고 1)**

➡ **(행정상) 재단 조직, 박람회장의 규모, 용도, 주변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을 개정(현행화)하도록 요구(통보 1)**

4. 재단 반부패 관련 규정 운영 등 부적정

가. 재단 부패신고 규정에 관한 사항

○ **재단은**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의 적용을 받는 **공직유관단체**('13.6.30 지정)로서, 부패행위 신고·접수 및 처리 절차, 신고의 종결, 신고자 보호 등의 규정을 갖춰야 함

- 그러나, 재단에서는 **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**와 관련된 **자체 규정**이 **없어** 부패사건에 대한 신고 처리절차, 신고자 보호 등의 **제도**가 **운영되지 못하는 상황**

나. 재단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

1)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

○ 재단의 「임직원 행동강령」 제6조에 따라 **임원**(이사장, 감사)은 **임용 전 3년간**의 **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**을 서면으로 **제출해야 함**

- 그러나, 재단에서는 임원의 **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**을 **제출 받지 않아** 임원이 **임용**되기 **전 재직**한 **단체 등**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**차단**할 수 있는 **여건**이 **갖춰지지 않음**

2) 「이해충돌 방지법」과 「임직원 행동강령」의 규정 중복에 관한 사항

○ 사적 이해관계 신고, 가족채용 제한 등을 수록한 「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된 만큼,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**「임직원 행동강령」** 상 8개의 **조문***을 **정비**할 **필요**가 있음

* 사적 이해관계 신고,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, 고위공직자(임원)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,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, 가족 채용 제한, 수의계약 체결 제한,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,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

➡ **(행정상) 재단 자체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(통보)**

➡ **(행정상) 임원에게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요구(통보)하고, 「이해충돌 방지법」과 중복되는 「임직원 행동강령」내 조항을 정비토록 요구(통보)**

5. 재단 계약규정에 관한 사항

○ 재단은 별도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「국가계약법」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관련 제도 취지를 반영하여 「계약규정」 운영 중

-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추정가격 **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**인 **수의계약**의 경우 **소기업(소상공인)과 체결**하도록 하고, **2천만 원 이하**인 **물품 제조·구매** 또는 **용역계약**에 대해서만 **수의계약**을 체결토록 함('15.12 개정)

- 그러나, 재단 「계약규정」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**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** 계약 건에 대해 **수의계약**을 체결토록 하고 있음

➡ **(행정상) 소기업(소상공인) 대상 계약체결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취지를 자체 계약규정에도 반영 권고(권고 1)**

6. 계약직 직원 채용규정 준수 미흡

○ 박람회장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, 다양한 홍보채널 구축을 위해 **2021년도**에 **계약직 직원(문화예술분야 1, 홍보·마케팅분야 1)**을 **채용**

가. 채용 공고에 관한 사항

○ 기관의 대외 공식 의사표시인 **채용 공고 시** 재단 「인사관리규정」에 따른 **서류전형 방식** 및 **수습기간 부여 여부**, 「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」에 따른 **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기준** 등 **미준수**

- 자격, 경력 등 적합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**적격 여부**를 **판단**하는 서류전형 **기준**과 달리, **점수 순**으로 **합격자**를 **결정**한다고 **적시**

- **일반직 직원** 채용 시 **수습기간**(3개월)을 **부여**하는 기준에도 불구, 채용되는 **계약직 직원**에게 **수습기간**을 **부여**한다고 **기재**

- **분야별 선발예정인원**이 **4명 이상**인 경우에만 취업지원대상자에게 **가점**을 **부여**할 수 있음에도 불구, **가점 부여**를 **우대사항**에 **수록**

※ 다만, 채용공고문 상 오 기재된 상기 사항들이 실제 전형 절차 진행과정 및 채용 이후에 실행되지는 않음

나. 면접전형에 관한 사항

○ 재단 「인사관리규정」에서 정하는 **면접전형 평가항목** 중 **일부**를 **변경·적용**하였고, 면접전형 **점수 배점** 및 **합격기준**에 대한 **관련 규정 미비**

- 면접전형 평가항목* 중 '예의·품행 및 성실성', '창의력·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'을 '**조직관리능력**'과 '**업무추진역량**'으로 변경하여 평가

  * ①정신자세,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③의사발표 정확성과 논리성, ④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창의력·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

- 재단 「인사관리규정」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**면접전형 점수부여** 및 **합격기준***을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에 따라 적용 중

  *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별 20점 배점으로 평가위원별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

➡ **(행정상) 향후 재단의 채용공고문이 재단 내규 및 타 지침 등 채용전형과 관련된 내·외부 규정을 위배한 상태로 작성·공개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행 요구(통보 1)**

➡ **(행정상) 채용 대상 직무별 평가항목의 다양화, 평가항목별 배점, 각 평가항목 합산점수의 하한선 및 합격 판단 기준 등 면접전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재단 인사규정에 마련 요구(통보 1)**

[현지처분]

1. 박람회장 시설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현행화 필요

○ 재단에서는 **용역업체***(이하 "업체")를 **별도 선정**하여 국제관, 홍보관, 스카이타워 등 **박람회장 내 시설물 관리** 중

* ㈜ㅇㅇㅇㅇㅇ / (금액) 709백만원 / (기간) '22.1.1~12.31

- 업체는 「전기사업법」, 「소방시설법」 등 시설 관리와 관련된 각 분야별로 법정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해야 하며,

· 특히, 박람회장 시설물은 「소방시설법」에 따른 “특정소방대상물”로서,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함

- 이와 관련, 용역업체는 8명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직원 퇴사 시 다른 인원을 선임해야 하나,

· 확인 결과, 현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2명은 각각 올해 3월과 5월에 퇴사한 직원으로 드러남

➡ **(행정상) 현재 업체에 재직 중인 직원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현행화 조치 요구(통보), 향후 각 분야별 법정 안전관리자가 적기에 선임·배치 되도록 정기적으로 확인 요구(통보)**